



‘학생의 꿈, 교원의 사랑, 학부모의 믿음’

가정통신문

발송일 2020.07.23
발송처 입암중학교
문의전화 534-2901

청소년 대상 불법금융 피해예방 안내

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‘대리입금’(일명 ‘델입’, ‘랜덤박스’, ‘랜덤봉투’ 등),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1. 대리입금(‘델입’, ‘랜덤박스’, ‘랜덤봉투’ 등)

1. 현황

-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, 연예인 기획상품,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(2~7일간)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~50%(연이자 1,000%)를 수고비로 요구하고,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,000원~10,000원의 지각비(연체료)를 부과합니다.
-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을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
피해사례

- ▶ (불법추심) A는 3일간 10만원을 빌리고 14만원을 상환하였는데도 36시간 연체에 대한 지각비 5만원(시간당 1,500원) 추가 요구 및 야간 협박 전화 등 불법추심에 시달림
- ▶ (과다변제) B는 좋아하는 아이돌의 상품을 사고 싶어 SNS를 통해 여러명으로부터 2~10만원씩 대리입금을 이용하였으나, 상환을 못해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결국 이자 포함 400만원을 변제

2. 유의사항

①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

- 이자, 연체료 대신 “수고비”, “지각비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지인 간 금전 거래로 가장하고 있으나, 이자가 연 1,000% 이상에 달하는 등 고금리 사채입니다(법정이자율 연 24%).

② 다른 사람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가능

- 용돈벌이로 SNS에 광고를 올리고 여러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할 경우 **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** 등의 위반소지가,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추심할 경우 **개인정보법** 등의 위반소지가 있어 **형사처벌 대상**이 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위도 빈번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.

2. 개인정보 요구

1. 현황

-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이 SNS를 통해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후 **학생들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**
 - 통상 사기범은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**도박·게임 사이트 등에 가입하고, 핸드폰 소액결제, 카드사용 등을 요구**

피해사례

- ▶ 고등학교 중퇴생 A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같은 또래집단을 사칭하여 B중학교 학생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이름, 핸드폰번호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라이브스코어 등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

2. 유의사항

- 1 **개인정보, 금융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!**
 - 본인 명의를 도용한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타인이 개인정보나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알려주서는 안됩니다.
- 2 **의심되는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!**
 - ‘모바일 상품권 증정’과 같이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(URL)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.

3. 대응요령

- 1 **피해발생시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세요!**
 - 대리입금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반드시 **학교전담경찰관(SPO : School Police Officer), 선생님,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 바랍니다.**
 - 금융감독원 「**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**」(☎1332)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
 - * www.fss.or.kr → 민원신고 →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‘불법사금융·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’
- 2 「**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**」을 적극 활용하세요!
 -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「**파인**」(<http://fine.fss.or.kr>)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, 카드발급 등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제한되어 **금융사고를 예방**할 수 있습니다.

2020. 07. 23

입암중학교 장